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7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조정훈 · 김장겸 · 최수진
조경태 · 김미애 · 서천호
정성국 · 박충권 · 김용태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시설은”을 “교육시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 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교육 시설</u> 은 제외한다.	4. ----- ----- ----- ----- ----- ----- ----- ----- ----- ----- ----- <u>교육 시설</u>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은-----.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	------------------